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07 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한병도·서영교·박상혁

이상헌 • 전용기 • 김민철

김승원 · 정일영 · 김민석

윤준병 · 임호선 · 이용빈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, 공기업의 장·부기관장·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,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·취득경위·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·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.

따라서 임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,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

시급함.

이에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 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제12 의2 신설).

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·취득경위·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,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5항 및 안 제14조의16 신설).

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

제4조제5항 단서 중 "대하여"를 "대하여,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 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에 대하여"로 한다.

제2장의2의 제목 중 "신탁"을 "신탁 등"으로 한다.

제2장의2에 제14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16(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(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,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)가 관련 업무 분

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,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등록의무자) ① 다음 각 호	제3조(등록의무자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	
자(이하 "등록의무자"라 한다)	
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	
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2의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
	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
	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
	<u>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</u>
	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
	<u>원</u>
13. (생 략)	1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~ ④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	⑤
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	
자・취득경위・소득원 등을 기	
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	
수 있다. 다만, 제10조제1항 각	
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	
산,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	
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	

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-----대하여, 제3조제1 한다.

⑥·⑦ (생 략)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|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

<신 설>

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・취득경 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대 위·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 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---.

> ⑥·⑦ (현행과 같음) 등

제14조의16(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 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 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 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(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, 제 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 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 한다.)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 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 한할 수 있다. 다만, 상속이나
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,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